

◇ 자 료

書雲觀志의 翻譯, 註 및 解説 3. 薦舉·科試·取材

俞 景 老
서울대

1. 緒 論

書雲觀志 第一篇 官職에 기술된 觀象監 職員의 選拔, 任用方法에는 薦舉, 科試, 取材의 세가지가 있어서 각각 그 第三·四·五篇에 記載되어 있다.

이제 各 篇마다의 翻譯과 註를 쓰고 解説은 한꺼번에 提示하기로 한다.

2. 翻譯과 註

2-1. 第三篇 薦舉¹⁾

(2)²⁾

觀象監의 職員이 되기를 원하는 者(願屬者)³⁾는 署經⁴⁾의 例에 따라 父系, 母系, 妻系의 四祖單子⁵⁾와 薦舉保證人의 保舉單子⁶⁾ (3人의 保證(三保)⁷⁾을 갖추어야 한다. 天文學은 判官 이상 2人과 三曆官 1人이며 地理學과 命課學의 保證人은 2人은 같으나 1人은 그學의 判官 이상으로 한다)를 祿官⁸⁾廳⁹⁾에 제출한다 (先生¹⁰⁾의 子弟는 곧바로 三曆廳에 제출한다. 判官 이상을 지낸 사람이라야 비로소 先生이라고 한다. 從子¹¹⁾나 女婿¹²⁾도 子弟와 같다).

各 學의 教授, 訓導 및 東班遞兒祿官¹³⁾이 같이 모여서(會衙)¹⁴⁾ (10人 미만이면 開坐¹⁵⁾하지 못한

1) 薦舉: 所定의 地位 이상의 官員으로부터 人材를 薦舉받아서 敍用하는 制度.

2) 原典에서 各行마다 첫 列부터 쓰여진 글을 뜻하는 符號.

3) 願屬者: 觀象監 所屬의 職員이 되기를 志望하는 사람.

4) 署經: 審査를 거쳐서 同意하는 節次.

5) 四祖單子: 父, 祖, 曾祖, 高祖의 四代의 姓名, 官職 등을 記錄한 書類.

6) 保舉單子: 薦舉하면서 保證하는 書類.

7) 三保: 3人의 保證.

8) 祿官: 祿俸을 받는 官員.

9) 祿官廳: 祿官의 任用을 管理하는 官廳.

10) 先生: 觀象監에서 判官(從五品) 以上の 職을 歷任한 사람.

11) 從子: 兄弟의 아들, 조카.

12) 婿: 사위.

13) 東班遞兒祿官: 觀象監 正職이 아닌 文官職으로 減額된 祿俸을 받으며 觀象監의 일을 보는 官員.

14) 會衙: 官衙에서 議決할 것을 위하여 會議하는 것.

15) 開坐: 會議에 參席할 사람의 數가 成員이 되어서 正式으로 會議을 여는 것.

다. 願屬者는 會衙前에 名啣을 여러 祿官에게 돌린다. 이를 向風¹⁶⁾이라고 한다. 禁漏¹⁷⁾에서 臨時로 나오는(權差¹⁸⁾ 參外者¹⁹⁾에게도 돌론 돌린다) 可否를 相議한다 (祿官이 各各 자리에 앉으면 庫直²⁰⁾이가 곧 종이에 可字와 不字를 써서 자리 앞에 나누어서 돌리고 끊어 앉아서 單子를 읽어서 告한다. 이것이 끝나면 缸筒²¹⁾을 가지고 돌면서 可否를 표시한 종이를 받아 넣어가지고 와서 筒을 엮어서 투표한 종이를 點檢한다. 三不²²⁾이 상이면 記錄에 올리는 것(入錄²³⁾)을 不許한다. 세번이나 떨어지면(枳塞²⁴⁾) 다시는 薦學의 議論을 하지 않는다). 그 二不 이하를 취하여 保舉單子와 四祖單子에 記錄(載錄²⁵⁾)하여 三曆廳으로 移送한다 (地理 命課의 兩學은 該當學(該學²⁶⁾)으로 直送하여 該學에서 또 可否를 會議²⁷⁾한다. 다만 二不 以下를 取하여 記錄하여 三曆廳으로 보낸다(錄送²⁸⁾). 願屬者가 반드시 3人을 채운 後에야 三曆官이 會衙한다 (三曆官이 20員 未滿이면 開坐하지 못한다). 會衙에서 可否를 相議하여 그 二不 以下를 取하여 (向風과 通塞²⁹⁾의 예는 모두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先生의 子弟도 그와 같다) 錄案³⁰⁾에 올리게 한다 (各 該學의 任官³¹⁾ 手本³²⁾이 完成되면 生徒差帖³³⁾을 준다. 各 該學의 任官은 天文學은 本廳의 公事員³⁴⁾이고 地理學은 그 教授, 命課學은 그 訓導이다. 아래에서도 이에 따른다).

(3)³⁵⁾

옛부터 薦學은 하나같이 이 例에 따라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그런데 各 該學이 각각 나누어서 薦學하게 된 이후부터는 이러한 例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그 전의 사람들(前人)이 法令을 단속했던 것(約束³⁶⁾)을 되살린 것도 아니었다.

癸酉(純祖 13年, 1813) 봄에 觀象監에서 官議³⁷⁾가 많았던 것은 이를 矯正(矯揉)하는 方法 때문이었는데, 모두들 이제까지의 方法을 그대로 하는 것이 穩當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렇게 本學³⁸⁾에서 薦學을 主管하는 規則을 復舊시키지 못한다면 어찌 觀象監 全體의 和合하는 義理를 잃지 않겠느냐 하여 不得已(不獲已)해서 薦學의 規則을 改定하였다. 그리하여 志願者(願屬人)는 어떤 學을 莫論하고 四祖單子와 保舉單子を 作成하여 本學에다 提出한다.

16) 向風: 志願者가 審査하는 會衙 前에 審査員에게 그 名啣을 돌리는 것.

17) 禁漏: 宮中の 漏刻, 즉 들시계 또는 그 일을 맡은 官署.

18) 權差: 臨時로 委囑하는 것.

19) 參外者: 또는 參外官, 7品 이하의 官員.

20) 庫直: 倉庫를 지키는 사람.

21) 缸筒(항통): 항아리와 같이 생긴 통, 투표함의 일종

22) 三不: ‘不’로 採點된 票가 3매인 것. ‘二不’은 2매의 不票.

23) 入錄: 合格의 記錄을 올리는 것.

24) 枳塞: 薦學의 審査에서 떨어지는 것.

25) 載錄: 記載하는 것.

26) 該學: 天文, 地理, 命課의 該當學.

27) 會議: 모여서 議論하는 것.

28) 錄送: 文書에 記錄하고 보내는 것.

29) 通塞: 通하고 막히는 것.

30) 錄案: 選定된 사람의 명단.

31) 任官: 任用된 官員.

32) 手本: 下官이 直屬上官에게 보내는 自筆의 報告書.

33) 差帖: 任用하는 辭令狀.

34) 公事員: 公務를 맡은 官員. 從6品인 듯하다.

35) 原典에서 各行의 둘째 列부터 쓰여진 글을 뜻하는 符號.

36) 約束: 法令으로 단속하는 것, 또는 圓束하는 法令.

37) 官議: 官廳의 會議.

38) 本學: 天文學을 말한다.

任官은 各 學科의 參外³⁹⁾ 以上으로 하여 會衙해서 相議하여 薦舉한다(擬薦).⁴⁰⁾ 會衙에 參席하는 者가 반드시 60員을 채워야 비로소 開坐하여, 可否를 相議한다. 다만 二不 以下만을 取하여 錄案에 올리게 한다. 每番의 科試 때마다 今後의 屬錄者⁴¹⁾는 모두 各 學 志願에 따라서 應試하도록 許諾하게 한다. 이는 三學에서 薦舉를 얻은 것이므로 各 該學의 生徒는 다시 區別이 없는 것이다.

教授, 訓導 및 東班遞兒는 모두 各 學科의 人이며, 이미 會薦⁴²⁾의 자리에 참여했으므로 먼저부터 祿官으로서 該廳으로 移送하는 規則이 自在⁴³⁾함은 勿論이다. 그러나 先生의 子弟에 대하여는 各其의 學에서 前과 같이 議薦⁴⁴⁾하는데 女婿는 여기에 끼지 않는다(不與).

戊寅(純祖 19年, 1818)에는 定員(定額)⁴⁵⁾이 없어서 三學의 各 廳官⁴⁶⁾이 前과 같이 會薦하였는데 本學의 三曆官, 修述官, 地理學의 實官,⁴⁷⁾ 命課學의 誼吉官, 修選官과 三學의 別選官이 會衙하여 40員을 議薦함을 定式으로 했으니 서로 和合하여 困難을 當해도 흔들리지 않는 方策이다(薦式⁴⁸⁾은 위와 같은데 生徒의 禮木⁴⁹⁾은 비로소 10분의 8로 減하여 지금은 2疋이 되었다. 先生의 子·婿·弟·侄은 또 그 半이다).

入仕⁵⁰⁾의 規則은 天文學은 名啣을 本學의 先進에게 돌린다. 地理學, 命課學은 名啣을 天文學의 堂上과 任官 및 該學의 先進에게 돌린다. 各 該任官이 該學의 薦案⁵¹⁾을 檢討(取考)⁵²⁾하여 바로 從仕토록 許諾하여 勤務하게 한다(就直).⁵³⁾

이미 從仕하고 登科했어도 만약 그 父·母·妻系의 四祖에 잘못(舛)이 있거나 또 그 自身이 罪(辜)를 犯한 者라면 規則에 따라서(隨規)⁵⁴⁾ 屬錄案에서 削除하고(削案)⁵⁴⁾ 薦舉한 者(薦主)⁵⁵⁾도 같이 連坐된다.

39) 參外: 參外官.

40) 擬薦: 薦舉를 결정하는 것.

41) 屬錄者: 錄案에 이름이 오른 사람.

42) 會薦: 會議에 의하여 薦舉하는 것.

43) 自在: 自然히 또는 當然히 있다는 뜻.

44) 議薦: 會議하여 薦舉하다.

45) 定額: 定員.

46) 廳官: 天文, 地理, 命課의 各 廳의 官員.

47) 實官: 正式 名稱이 없으나 실제로 職務를 맡아 하는 사람의 지칭. 地理學에 잠시 있었던 制度이었다.

48) 薦式: 薦舉하는 方式.

49) 禮木: 謝禮의 禮物로 바치는 무명.

50) 入仕: 任命되어 出勤하는 것.

51) 薦案: 薦舉書類(文書).

52) 取考: 모아서 檢討하는 것.

53) 就直: 勤務하다(?).

54) 削案: 屬錄案에서 削除하는 것.

55) 薦主: 薦舉의 保證人.

교1) 原典에서의 隨現의 現은 規의 誤植.

2-2. 第四篇 科試¹⁾(1)²⁾

高麗 光宗 9年(958)에 비로소 科擧를 設置하여 詩·賦·頌과 時務策으로 進士를 뽑았고 兼하여 明經, 醫,卜 등의 業³⁾을 뽑았다. 雙冀의 建議를 좇은 것이다.

○ 우리 太祖 丁丑年(6年, 1397) 봄에 처음으로 舍人所⁴⁾를 三軍府⁵⁾에 두었고, 또 六學敎導官⁶⁾을 두어서 分科해서 業을 익혔다. 그 名稱은 經學⁷⁾은 明體適用之堂⁸⁾이라 했고, 兵學⁹⁾은 先計制勝之堂이라 했고, 律學¹⁰⁾은 欽恤之堂이라 했고, 算學¹¹⁾은 詳明之堂이라 했고, 醫學¹²⁾은 濟生之堂이라 했고, 射¹³⁾는 觀德之堂이라 했다. 公, 卿, 大夫에서 士의 子弟에 이르기까지 成童¹⁴⁾ 以上으로 京都에 살면서 아직 出仕하지 않은 者는 모두 이에 들게 했다.

○ 權近¹⁵⁾의 論文科疏略¹⁶⁾에 이르기를 “漢吏의 글¹⁷⁾은 事大의 緊要한 事務로서 重히 여기지 아니해서는 안되는데 이제 醫, 譯, 陰陽, 律¹⁸⁾의 學은 모두 科目에 있으나 이것만은 없습니다. 참으로 規定의 未備(闕典)¹⁹⁾입니다. 빌건대 前朝의 明經科²⁰⁾의 例에 의하여 文科의 終場²¹⁾試日에 吏文의 선비(士)를 아울러 試驗하되 正科²²⁾에다 같은 榜²³⁾으로 及第證書를 주어서(唱名)²⁴⁾ 諸科²⁵⁾와는 다르게 하여 文科에 응시하는 者로서 吏文에도 아울러 應試

1) 科試: 科擧의 試驗.

2) 原典에서 各行이 제4列부터 쓰여진 글을 뜻하는 符號.

3) 業: 技能職을 말함.

4) 舍人所: 舍人은 高麗 때부터 있던 四品職으로 여러가지가 있었다. 朝鮮에 와서도 계승된 것인데 여러가지로 바뀐 듯하다.

5) 三軍府: 이는 조선초의 三軍都摠制府를 가리키는 것 같다.

6) 六學敎導官: 六學은 經學, 兵學, 律學, 算學, 射學, 醫學의 여섯가지의 敎育을 하는 곳이며, 敎導官은 각각의 分野의 敎育을 擔當한 敎官.

7) 經學: 儒學의 經典을 배우는 곳.

8) 明體適用之堂: 經學敎育의 目標로서 그 建物の 看板으로 걸었던 것.

9) 兵學: 戰術의 學(校).

10) 律學: 法律의 學(校).

11) 算學: 數學의 計算의 學(校).

12) 醫學: 藥과 醫를 다루는 學(校).

13) 射: 弓射를 배우는 곳.

14) 成童: 15세에 이른 男子.

15) 權近: 朝鮮初의 學者, 名臣(1352-1409). 本貫은 安東, 字는 思叔, 號는 陽村, 入學圖說을 著述.

16) 論文科疏略: 權近이 임금 太祖에게 올린 建議書의 이름.

17) 漢吏之文: 中國에 대한 事大文書.

18) 醫, 譯, 陰陽, 律: 科學 雜科의 4分科로 醫術, 通譯(漢·倭·女眞語), 陰陽術(天文, 地理 命課), 律(法律)이다.

19) 闕典: 法典 또는 規定의 未備.

20) 明經科: 高麗時代의 科擧의 한 分科로서 試驗科目은 詩·書·易·春秋·禮記이며, 初·會·覆試의 걸쳐서 試驗했다.

21) 終場: 數日에 걸친 試驗에서의 마지막으로 보는 試驗의 場所.

22) 正科: 文科의 正式試驗.

23) 榜: 榜目, 榜文의 준말. 榜目은 科擧에 及第한 者의 姓名을 記錄한 冊, 榜文은 科擧에 及第한 것을 알리는 揭示文.

24) 唱名: 唱榜, 科擧 及第의 證書(紅牌, 白牌와 같은)를 주는 것.

25) 諸科: 雜科를 뜻한다.

하고자 하는 者가 있으면 이를 聽許하여 正科의 안에서 그 分數²⁶⁾를 加하게 하소서”하였다.

- 國初에는 諸科의 차례에서 陰陽科가 第3에 있었다. 英宗 癸巳年(49年, 1773)에 王命을 받들어 陰陽科를 譯科와 醫科의 첫머리로 하여 大典通編²⁷⁾에 실었다.

(2)

式年科²⁸⁾와 增廣科²⁹⁾에 陰陽科를 開設하였다. 初試³⁰⁾의 開場 前期에 本監에서 入門官 4員(天文學 2人, 地理學, 命課學 각 1人이며 각 該學의 判官 以上으로 委囑한다)을 定하면 坐衙³¹⁾하여 榜³²⁾을 내걸고 舉子³²⁾에게 널리 알린다.

舉子³²⁾는 儒巾³³⁾과 圓領³⁴⁾을 갖추고 그 四祖單子와 保舉單子(三保를 갖추기를 入屬할 때의 例와 같이 한다)를 入門所에 써서 제출하면, 姓名을 記錄하고 應試하게 한다(薦舉를 거친 者가 試驗을 본다(赴舉)³⁵⁾). ○大典通編에는 天文學은 本學(天文學)의 生徒 外에는 應試를 許諾하지 않는다고 했다).

試官³⁶⁾은 提調 2人(혹은 1人, 正宗 戊戌年(24年, 1778)에 2人이 나가서 일에 參與(進參事)³⁷⁾한 後부터 이를 받들어 이어 傳해서 定式이 되었다).

參試官³⁸⁾은 三學의 堂下官 각 2人(三學의 判官 以上으로 相避³⁹⁾가 없는 者로 각각 3名の 候補者를 골라서 推薦하여 올리면 領事⁴⁰⁾가 選拔 任命한다. 兩學科者⁴¹⁾는 天文學의 參試官으로 推薦할 수 없다. ○前에는 堂上參試官에 定員이 없었다. 三學의 堂上으로 相避가 없는 사람은 進參했는데 만약 品階가 반대로 提調보다 降等하면 參加하지 않는다. 天文學堂上은 兩學의 試驗에도 亦是 參與한다).

試驗科目은 天文學은 講書⁴²⁾는 步天歌⁴³⁾(誦⁴⁴⁾ ○지금은 新法步天歌⁴⁵⁾를 쓴다), 天文曆法, 大典

26) 分數: 科學의 試驗의 採點成績.

27) 大典通編: 正祖 때에 金致仁 등이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受教輯錄을 모아서 編纂한 法典.

28) 式年科: 太歲가 子·午·卯·酉가 드는 해를 式年이라 하는데, 이 式年에 보이는 正統의인 科學.

29) 增廣科: 나라에 慶事가 있을 때 기념으로 보이는 科學.

30) 初試: 科學는 보통 初試와 覆試와 나누어 보는데 初試는 式年의 전 해에 서울과 地方에서 實施한다.

31) 坐衙: 官衙의 首長 또는 堂上官이 出勤하여 執務하는 것.

32) 舉子: 科學를 보는 선비.

33) 儒巾: 선비들이 쓰는 巾의 일종.

34) 圓領: 옷깃을 둥글게 만든 官員의 公服.

35) 赴舉: 試驗보러 가는 것.

36) 試官: 科學의 試驗의 最高責任者로 出題, 採點 등을 담당한다.

37) 進參, 進參事: 나아가서 일에 參與한.

38) 參試官: 試驗에 參與하여 試官을 돕는 사람.

39) 相避: 親族 또는 가까운 關係에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에는 試官, 參試官 등으로 그 試驗에 關與할 수가 없다. 그러한 立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0) 領事: 領觀象監事의 略稱.

41) 兩學科者: 地理學, 命課學에 所屬된 官員.

42) 講書: 글을 講하는 것. 背講, 臨文, 講譯의 총칭.

43) 步天歌: 별과 별자리를 記憶하기 좋게 韻文으로 記述한 冊. 隋의 丹元子の 著述이라고 傳한다.

44) 誦: 暗記하여 외우는 것.

45) 新法步天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별의 歲差에 의해 옛 步天歌가 맞지 않게 되어 새로이 實測하여 만든 步天歌로서 淸에서 編纂된 燕京實測新書에 있는 것을 朝鮮 後期の 李俊養이 그 星圖와 歌訣을 옮기고 뒤에 論說을 붙여서 刊行한 것.

通編 (이상 臨文⁴⁶⁾), 籌⁴⁷⁾는 時憲法⁴⁸⁾七政⁴⁹⁾籌, 時憲法交食籌⁵⁰⁾ (假令⁵¹⁾), 地理學은 青烏經⁵²⁾, 錦囊經⁵³⁾(이상 背講⁵⁴⁾), 明山論⁵⁵⁾, 胡舜申⁵⁶⁾, 洞林照膽⁵⁷⁾, 琢玉斧⁵⁸⁾, 大典通編 (이상 臨文 ○처음에는 地理門庭⁵⁹⁾, 摠龍⁶⁰⁾, 捉脈賦⁶¹⁾, 擬龍⁶²⁾의 4冊을 썼으나 지금은 廢했다), 命課學은 袁天綱⁶³⁾ (背講), 協吉通義⁶⁴⁾, 大典通編 (이상 臨文 ○처음에는 剋擇通書⁶⁵⁾를 썼으나 뒤에 範圍數⁶⁶⁾, 徐子平⁶⁷⁾, 應天歌⁶⁸⁾, 時用通書⁶⁹⁾로 바꾸어 썼다. 天文學의 天文曆法, 地理學의 琢玉斧, 命課學의 時用通書는 英宗 甲子年(20年, 1744)부터 시작했다. 正宗 丁巳年(21年, 1797)에 協吉通義로 바꾸어 썼다. 詳細한 것은 아래의 故事篇에 있다).

合格者로는 天文學 10人, 地理學 4人, 命課學 8人을 取했다 (大増廣試⁷⁰⁾에서는 三學이 각각 4人씩을 더 뽑았다. ○舊例는 增廣 式年은 初試에서 地理 命課 각 4人을 뽑았고, 覆試에서 각각 2人을 取했다. 正宗 丁巳年(21년, 1797)에 命課學은 初覆試를 倍로 뽑아서 廣選⁷¹⁾에 對備하였다. 詳細한 것은 아래 故事篇에 있다).

試驗의 採點은 그 分數⁷²⁾에 따르는데 于先 大畫⁷³⁾에 따른다 (下柱⁷⁴⁾에 따라 만약 一通 一略, 一粗⁷⁵⁾라면 粗로 한다는 類이다. 아래에서도 이에 따른다).

46) 臨文: 冊에 있는 글을 놓고 보면서 說明 解釋하는 것.

47) 籌: 天文現象의 時刻, 位置, 其他를 計算하여 豫報하는 것.

48) 時憲法: 淸에서 編纂·使用한 時憲曆法.

49) 七政: 日·月과 木星·金星·火星·水星·土星의 五星의 7개의 天體.

50) 交食: 日食과 月食.

51) 假令: 天文計算에서 假定된 條件에서 展開되는 現象을 計算하는 것. 一種의 計算例.

52) 青烏經: 漢의 青烏子가 撰하였다는 風水地理學書.

53) 錦囊經: 晉의 郭璞이 撰하고 唐의 張說 등이 註한 風水地理學書.

54) 背講: 冊을 펴놓고 돌아 앉아서 暗誦하는 것. 또는 冊을 보지 않고 글의 뜻과 註疏를 대답하는 것.

55) 明山論: 中國의 蔡成禹가 撰한 風水地理學書.

56) 胡舜申: 宋의 胡舜申이 撰한 地理新法 胡舜申이라는 風水地理學書.

57) 洞林照膽: 五代의 范越鳳이 撰한 風水地理學書.

58) 琢玉斧: 明의 徐之鑠이 撰한 相地法의 書.

59) 地理門庭: 宋의 蔡成禹가 撰한 風水地理學書.

60) 摠龍: 唐의 楊筠松이 撰한 風水地理學書.

61) 捉脈賦: 晉의 陶侃이 撰한 風水地理學書.

62) 擬龍: 唐의 楊筠松이 지은 風水地理學書.

63) 袁天綱: 袁天綱三星三命指南이란 이름의 冊으로 唐의 袁天綱이 撰한 命課學에 관한 冊.

64) 協吉通義: 正祖 때 閔鍾顯이 王命을 받아 魏鑑의 象吉通書와 梅穀成的 協紀辨方書를 고치고 추려서 編纂한 것으로 占驗 五行生剋 등을 다룬 方書.

65) 剋擇通書: 宋의 宋魯珍이 撰한 擇日에 관한 方書로 原名은 陰陽寶鑑剋擇通書이다.

66) 範圍數: 明의 趙迎이 撰한 占筮의 術을 지은 方書.

67) 徐子平: 本名은 徐子平三命通變淵源이란 冊으로 宋의 徐大升이 徐子平의 三命之術을 지은 冊.

68) 應天歌: 宋의 郭程이 撰한 方術書.

69) 時用通書: 日常生活에서의 擇日法을 記述한 方書인 듯하다.

70) 大増廣試: 나라에 慶事가 겹쳤을 때 보는 科擧로 式年試. 增廣試보다 7人을 더하여 40人을 뽑는다.

71) 廣選: 널리 뽑는다는 뜻인 듯하다.

72) 分數: 科擧에서의 成績의 點數.

73) 大畫: 科擧에서 通·略·粗의 數에 따라서 이를 다시 묶어서 通·略·粗로 해서 計算하는 法인 듯하다.

74) 下柱: 通·略·粗를 表記한 標의 數를 總合해서 다시 通·略·粗로 표시한 것을 下柱이라고 하는 것 같다.

75) 通·略·粗: 成績을 매기는 데 通·略·粗의 3단계로 하였다. 오늘의 A·B·C와 같은 식인데 이밖의 不은 落第點을 말한다.

다음에는 性數⁷⁶⁾를 따르고 또 그 다음에는 職次⁷⁷⁾를 따른다. (他司⁷⁸⁾의 職次는 각각 本監의 職次에 따라서 同品⁷⁹⁾의 아래에 붙인다). 또 그 다음에는 籌의 答을 提出하는 先後의 順序에 따라서 榜을 낸다(出榜)⁸⁰⁾ (榜目⁸¹⁾은 2件을 만든다. 楷書를 잘 쓰는 사람을 시켜서 나누어 쓰게 한다. 三學 參試官의 末官이 承政院과 侍講院에 바친다. 出榜한 다음날에 舉子是 巾과 服을 갖추고 榜目を 써 가지고 일제히 領事, 提調 및 各 學의 先進을 찾아가 뵈는다).

(3)

七曜籌⁸²⁾의 考試方法은 각각 七性의 數를 計算하여 萬若 一性이 粗나 略이면 다만 그 一性을 減할 뿐이다. 그러나 科試 全體를 통해서 計算할 때는 三學通融으로 통틀어서 畫을 計算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七曜籌도 역시 하나의 講書와 一般이어서 비록 一曜가 略이라고 해도 다만 下性을 따르는 例에 依하여 大畫은 略으로 施行하기 때문에 合當하다고 한다.

가까운 例로서 六通一略이면 或은 通으로 施行하는 者가 있고, 或은 略으로 施行하는 者가 있는데, 만약 下性을 따른다는 說(從下性之說)로써 이를 본다면 설사 六性 三通三略이면 略이라 하고 四通二略 以上이면 通이라고 하니, 어찌 七性 六通一略임에도 下性을 따르지 못하고 略이 됨이 明白한 것인가. 大小의 講規⁸³⁾를 參照하면 비록 하나의 六通을 죽이지 않는다는 글은 있어도 六通이 一略에 따른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이는 참으로 各性⁸⁴⁾과 合性⁸⁵⁾ (各 七性을 計算하는 것을 各性, 合해서 一性으로 하는 것을 合性이라고 한다)의 論에 말미암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是非가 紛紛해서 定式을 갖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前後의 科取⁸⁶⁾의 施行은 各性으로 한 것이 10 중 7, 8이었다.

- 대체로 科取考籌⁸⁷⁾의 規則은 差가 1分 以上이면 略이고 差가 10分 以上이면 粗이고, 差가 1度 이상인 것과 宮, 星의 이름, 南北의 符號⁸⁸⁾의 誤書, 落書는 모두 不로 한다. 經度, 緯度, 宿度⁸⁹⁾의 三段에서 一略이 있으면 略인데 粗와 不도 역시 이와 같다.

初試合格者로서 喪中에 있는 사람이나 莽年服⁹⁰⁾中으로 葬禮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覆試의 延期(陳試)⁹¹⁾를 許諾하여 增廣과 式年의 會試⁹²⁾에 같이 섞어 넣는다(大典通編).

76) 性數: 通·略·粗를 표시한 각 단계의 標識의 數를 뜻하는 것 같다.

77) 職次: 官職의 上下의 順序.

78) 他司: 觀象監이 아닌 다른 官署.

79) 同品: 品階가 같은 것.

80) 出榜: 科擧의 及第者를 발표하는 것. 放榜, 唱榜과 같은 뜻이다.

81) 榜目: 科擧에 及第한 者의 姓名을 記錄한 冊.

82) 七曜籌: 七曜는 七政과 같은 日·月·五星을 말하는 것. 七曜籌는 七曜의 주어진 時刻에서의 位置를 계산하는 것이다.

83) 講規: 講書의 採點規則.

84) 各性: 7개의 性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법.

85) 合性: 7개의 性을 합해서 한개의 性으로 해서 計算하는 法.

86) 科取: 科擧로 人材를 取하여 쓰는 것.

87) 考籌: 籌로 試驗하는 것.

88) 南北號: 별 位置의 赤道의 南北을 가르키는 符號.

89) 宿度: 28宿의 距星으로부터 그 별까지의 赤經差.

90) 莽年服: 祖父母의 喪에서와 같이 滿 1年 동안 服을 입는 것.

91) 陳試: 初試에 合格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禮曹에 告하고 다음 機會의 會試를 보는 것.

92) 會試: 覆試와 같음.

(2)

覆試는 禮曹에서 차리는데 開場에 앞서서 本監에서 入門官 4人을 定한다 (初試의 例와 같다). 舉子는 그 四祖單子와 保舉單子 (前에 侍從⁹³⁾이나 或은 禮曹의 郎官⁹⁴⁾을 지낸 사람은 한 사람이 혼자서 保證을 선다. 그러나 時任은 안된다) 를 入門所에 提出한다. 入門所에서는 姓名을 記錄하고 禮曹로 移送한다 (陰陽科는 諸科의 覆試보다 먼저 實施한다).

試官으로는 禮曹의 堂上官 3人 (처음에는 定員이 없었다. 正宗 癸卯年(7年, 1783)에 王命을 받아 3 堂上이 나아가 參事해서부터 恒規로 定해졌다) 과 本監의 提調 1人으로 하고 參試官에는 禮曹의 郎官 1人和 本監의 三學의 堂下官 각 2人으로 한다 (提調와 三學의 參試官은 本監에서 推薦해서 開場前 1日에 禮曹로 보내면 임금께 아뢰어 落點을 받는다(受點).⁹⁵⁾ 提調는 차례를 적은 目錄(坐目)⁹⁶⁾에 따라서 任用者를 決定한다(倒望).⁹⁷⁾ 地理, 命課의 兩學의 人員數(員額)⁹⁸⁾가 적고 또 相避가 많기 때문에 候補者를 고르기 어려울 때는 單一候補(單望)⁹⁹⁾로 올려서 임금의 재가를 받는다(啓下)¹⁰⁰⁾). 그리고 監試官, 兩司官 각 1人씩으로 한다 (전에는 監試官이 執冊¹⁰¹⁾의 일을 했다. 英宗 壬午年(38年, 1762)에 禮曹의 奏에 따라 明經科의 例에 의하여 改革했다). 講書와 簿道 같다.

覆試⁹²⁾에서 天文學 5人, 地理學 2人, 命課學 4人을 뽑는다 (大増廣試에서는 三學이 각각 2人씩을 더 뽑는다). 그 分數의 順에 따라서 榜을 낸다 (例는 初試와 같다).

(3)

中宗 辛卯年(26年, 1531)의 陰陽科 覆試 恩門錄¹⁰²⁾에 領議政 鄭光弼, 禮曹參判 南世準, 禮曹參議 蔡世傑, 繕工監正 李純, 軍器寺正 金洞, 執義 尹安仁, 正言 朴世蕃, 吏曹佐郎 金遂成, 禮曹佐郎 張應星, 觀象監正 趙碩, 觀象監正 宋璫, 觀象監正 成聃紀를 기록하고 있는데, 現在를 根據로 考察하여 보니 領議政은 本監의 掌試로, 禮曹의 亞三堂¹⁰³⁾과 佐郎은 本曹의 執義로, 正言은 兩司로, 觀象監正은 參試로 생각되나 繕工監正, 軍器寺正, 吏曹佐郎에 이르러서는 모두 依據할 바가 없다.

그러나 國朝寶鑑¹⁰⁴⁾에 이르기를 司成 李純이 中國에서 革象新書¹⁰⁵⁾를 얻었는데 그 속에 觀天의 器械로 이름을 目輪¹⁰⁶⁾이라는 것이 있어서 純이 그 冊을 參考하여 만들어 進上했는데 그 構造가 극히 精巧하였으므로 命하여 書雲觀에 두었다 하였으니 李純, 金洞 등은 曆理에 밝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93) 侍從: 侍從臣. 王을 모셔 시종하는 신하.

94) 郎官: 六曹의 正郎과 佐郎.

95) 受點: 二品 이상의 官員을 任命할 때 3人의 候補者(三望)를 올리면(注擬) 王이 意中에 있는 사람에게 點을 찍는다. 受點은 이러한 落點을 받는 것.

96) 坐目: 座目, 王이 堂上官의 散官의 高下에 따라 그때그때의 자리의 차례를 적은 기록.

97) 倒望: 候補者 名單에서 王이 적은 次例에 따라 任用者를 決定하는 것인 것 같다(未詳).

98) 員額: 定해진 人員數.

99) 單望: 單一候補者.

100) 啓下: 王에게 啓文을 올려서 裁可를 받는 것.

101) 執冊: 試驗에 쓰는 書冊을 管掌하는 것이 아닌가 解釋된다.

102) 恩門錄: 科擧의 試驗官에 관한 記錄.

103) 亞三堂: 三堂은 六曹의 判書, 參判, 參議의 三堂上官을 말하는 것. 亞三堂은 參判을 가르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104) 國朝寶鑑: 朝鮮祖의 歷代事蹟을 編年體로 記錄한 歷史書.

105) 革象新書: 中宗 때 中國에서 李純이 들여온 天文儀器에 관한 書籍.

106) 目輪: 현재 전래되는 目輪은 直徑 34cm의 木製의 圓盤 양면에 黃道南北의 恒星을 彫刻해 놓았고, 圓周에 周天度의 눈금이 있고 廻轉하는 窺衡이 달려 있다.

(2)

放榜(禮曹에서 王命을 받아 白牌를 준다. 다음날 大闕에 이르러 謝恩한다. 이어서 領事 提調와(恩門)先進¹⁰⁷에게 名啣을 돌린다. ○本監의 參謁¹⁰⁸하는 날에는 새로 科擧에 及第한 사람(新恩)¹⁰⁹들이 모여서 行禮한다. 參謁하기 前에는 科擧의 應試(赴試)와 昇進發令(陞差)¹¹⁰을 許諾하지 않는다. 科擧成績에서 1등은 從八品, 2등은 正九品, 3등은 從九品の 品階를 除授¹¹¹한다. 元來 品階가 있는 사람은 모두 한 品階를 더 加하고 加한 것이 應當 받을 品階와 같거나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또한 品階를 더해 준다. 그리고 品階를 받은 者는 모두 權知¹¹²에 任命한다(大典通編 ○壯元은 依例히 放榜後 都目¹¹³ 때에 奉事를 除授하는데 이것을 新恩遞兒¹¹⁴라고 한다. 이미 奉事나 또는 司猛을 지낸 사람이면 直長을 除授하고 直長 또는 司正을 지냈던 사람은 主簿로 陞進시킨다. 이에 붙는 祿俸(付祿)¹¹⁵은 각각 一等을 내려서 該學의 兩都目取才¹¹⁶에서 定한 바 祿窠¹¹⁷로서 支給한다.)

107) 恩門先進: 試官, 參試官 등 科擧試에 관여했던 선배들.

108) 參謁: 새로 堂下官職을 除授받은 者가 10日 이내에 議政府, 吏曹, 屬曹(여기서는 禮曹) 등을 찾아가 인사하는 것.

109) 新恩: 새로 科擧에 及第한 사람.

110) 陞差: 昇進任命되는 것.

111) 除授: 舊職을 除하고 新職을 授與한다는 原意에서 發令을 받는다는 말로 변했다.

112) 權知: 臨時職으로서 試補와 같은 것.

113) 都目: 都目政事의 略稱. 每年 6月과 12月에 吏曹, 兵曹에서 中外官吏의 功過를 論하여 그 成績에 따라 陞進 黜陟시키는 인사행정.

114) 新恩遞兒: 科擧에 壯元한 사람이 奉事에 除授된 것을 말한다. 새로 及第해서 된 遞兒職이란 뜻이다.

115) 付祿: 付料과 같다. 祿이 있는 官職과 없는 名譽職이 있으나, 名譽에도 祿을 付하는 일이 있다.

116) 兩都目取才: 매년 6月, 12月에 실시하는 兩都目政事에서 取才하는 것. 取才는 科擧 외에 人材를 뽑는 특별試驗法.

117) 祿窠: 祿科와 같은 것인 듯하다. 祿科는 支拂하는 祿의 品等を 말하는 것.

교1) 榜: 原典에서의 坐衙揭榜의 榜은 榜의 誤記.

교2) 初試: 原典의 初試取天文學五人의 初試는 覆試의 誤記.

2-3. 第五篇 取材¹⁾

(1)

三學의 科試와 取才에 사용하는 書名은 天文學에는 步天歌, 天文曆法이고 地理學에는 靑鳥經, 錦囊經, 明山論, 胡舜申이고, 命課學에는 袁天綱, 徐子平, 應天歌, 範圍數이다. 地理學의 四書는 배운 것이 곧 그대로 소용되는데 天文學은 지금은 時憲曆을 쓰며 太初曆과 大衍曆을 講한다.

命課學은 지금은 誨吉²⁾을 관장하여 오로지 祿命³⁾을 講할 뿐으로 배운 것이 이미 소용되지 않으니 어찌 그 作成의 효과를 바랄 수 있겠는가? 科試는 法典에 기재된 것으로 감히 通變하기를 급히 의논할 수는 없는 것이요, 取才는 이제부터는 祿取才⁴⁾와 別取才⁵⁾를 막론하고 天文學은 數理精蘊⁶⁾과 曆象考成⁷⁾으로 命課學은 協吉通義로 하여 전에 講했던 書名은 모두 삭제하였으나 地理學은 옛것을 그대로 쓴다. (辛亥年(正祖 15년, 1791)의 釐正節目⁸⁾에 있다).

(2)

겨울과 여름의 끝 달(季月)⁹⁾ 都目이 되었을 때 仕滿六朔¹⁰⁾이 된 자를 취한다(無祿으로 從仕하기를 一都目을 經過한 者를 仕滿六朔이라고 한다. 만일 仕滿百日者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取才에 응시하게 한다. 新恩選見는 그 都目에서 回試¹¹⁾하며 喪에 있다 服制를 마친 者나 久任¹²⁾의 教授 訓導로 만기가 되어 6월이나 12월 10일 이내에 교체하게 된(爪遞)¹³⁾者는 모두 赴試¹⁴⁾함을 막지 않는다. ○英宗 己丑年(45년, 1769)에 洪鳳漢 領監事가 처음으로 掌務官 1人을 두어 監務를 分掌시켰으니 久任의 혼자 애쓰는 苦生(獨賢之勞)¹⁵⁾을 除하기 위하여 時任祿官¹⁶⁾으로 임명하여 六朔에 交遞하는데 역시 回試케 했으나 乙未年(英祖 51년, 1775) 申晦 領監事가 權道¹⁷⁾로 이를 減했다).

提調 1人이 禮曹의 堂上官과 郎官과 같이 講書를 試驗했다(肅宗 甲申年(30년, 1704)에 禮曹 判書 閔鎮厚가 건의하여 諸學의 取才 때에 本曹의 堂上官이 有故할 때는 該司의 提調가 本曹郎官과 같이 取才

- 1) 取材: 才能을 試驗하여 選取한다는 뜻으로 科擧가 아니고 所定의 特殊한 職任에 대한 適任者를 뽑기 위하여 該當 試驗科目을 選別하여 실시하는 것.
- 2) 誨吉: 吉凶을 判斷하여 吉을 택하는 일.
- 3) 祿命: 富와 壽란 뜻인 것 같다.
- 4) 祿取才: 職啣만 있고 祿俸이 없는 者를 祿俸이 있는 官員으로 뽑는 取才試驗.
- 5) 別取才: 祿取才가 아닌 別途의 取才인데 內容은 不明.
- 6) 數理精蘊: 淸의 康熙帝 때 編纂된 算法書이다. 이것과 曆象考成, 律呂正義를 합하여 律曆淵源이라고 한다. 曆法計算에 필요한 數學書이다.
- 7) 曆象考成: 淸朝 때 編纂된 時憲曆의 曆法書로 梅穀成 등이 편찬한 上·下篇과 戴進賢 등이 編纂한 後篇이 있다.
- 8) 釐正節目: 改定된 內容을 記錄한 冊.
- 9) 季月: 春夏秋冬 各 季節의 各 3個月 중의 끝의 달로서 3·6·9·12월을 가르킨다. 仲月은 가운데 달로서 2·5·8·11월.
- 10) 仕滿六朔: 勤務期間이 6개월을 채웠다는 뜻.
- 11) 回試: 試驗에 돌린다는 뜻으로 應試케 한다는 것.
- 12) 久任: 官職에는 出勤日數로 定한 任期가 있어서 滿期가 되면 轉任하게 되어 있으나 특수한 職任에는 長期間(限 3年) 계속 근무하게 되어있는 자리 또는 그 官員을 久任이라고 한다.
- 13) 爪遞: 任期가 차서 交替하여 轉任하는 것.
- 14) 赴試: 試驗치러 간다는 뜻. 受驗 또는 應試.
- 15) 獨賢之勞: 어떤 어려운 職務를 혼자 맡아 하는 勞苦라는 뜻.
- 16) 時任: 原任(前任)과 對照的인 現任이란 뜻.
- 17) 權減: 特權으로 臨時的으로 減한다는 뜻.

하고 該司의 提調가 유고할 때는 本曹의 堂上官이 該司의 郎官과 같이 取才하며 郎官이 없는 곳의 提調가 有故할 때는 本曹의 堂上官과 郎官이 取才하기로 일이 정해졌다. 大典通編에 있다).

春夏의 等¹⁸⁾에는 天文學은 曆象考成(臨文), 時憲法七政籌이고 地理學은 靑鳥經(背講), 胡舜申(臨文), 命課學은 協吉通義(臨文)이다. 가을, 겨울의 等에는 天文學은 數理精蘊(臨文), 時憲法七政籌이고 地理學은 錦囊經(背講), 明山論(臨文), 命課學은 協吉通義(臨文)이다.

天文學은 8人을 뽑고 地理學, 命課學은 각각 2人씩을 뽑는다. 分數를 모두 같이 계산하여 먼저 大晝를 따르고 다음에는 六朔仕¹⁹⁾를 따르고 다음에는 性數를 따르고 다음에는 出仕日의 遠近을 따르고 다음에는 前의 等에서의 祿, 職의 高下를 따라서 陞降²⁰⁾과 付祿²¹⁾을 정한다 (三學의 參上²²⁾을 지낸 자는 優等이면 바로 正²³⁾을 除授하여 久任으로 하고 의례것 僉正을 붙인다. 參上을 거치지 않은 자와 正을 지냈던 자가 우등이면 모두 僉正을 除授하여 久任으로 하고 의례것 正에 붙인다. 參外²⁴⁾를 거치지 않은 자는 비록 성적이 1등이라도(居魁²⁵⁾ 다만 判官을 除授하는데 아직 科擧에 급제하지 않은 자는 直長을 넘지 못한다. 各學의 承傳을²⁶⁾ 받은 準職者²⁷⁾는 祿取才 優等의 例에 의하여 品階를 除授하는데 만약 품계가 높고 祿이 붙은 承傳이면 科擧한 자는 主簿로 올려서 除授하고 科擧를 못한 자는 다만 直長을 준다. 禁漏官은 비록 準職의 承傳이라도 直長을 넘지 못한다. 賞으로 付祿하는 데는 각 該學의 所定の 祿案에 따른다. ○禁漏官에게는 의례것 2窠를 붙여서 從仕日을 계산하여(計仕²⁸⁾ 그에 따라 品職을 除授토록 한다. 처음에는 參奉, 두번째는 奉事, 세번째는 直長, 네번째는 副奉事, 다섯번째는 直長을 除授하여 循次的으로 돌려가며 除授한다). 啓目²⁹⁾에 대한 下批³⁰⁾가 내리면 謝恩하고 출근하여 公務에 從仕한다(領事와 提調에 名啣을 드리는 것(投刺³¹⁾은 3일을 넘지 말아야 하며 兵曹에서 官員을 뽑을 때는 추천장(薦狀³²⁾을 本曹에 올리고 肅拜와 投刺는 아니한다).

(3)

大典通編에 이르기를 天文學에서는 步天歌는 暗誦이나 그림 그리기(圖33)³³⁾를, 大明曆³⁴⁾은 日月食과 太一³⁵⁾을, 七政算內編은 日月食 木火土金星, 太陽, 曆日³⁶⁾과 交食推步假令과 四餘星³⁷⁾

18) 等: 取才하는 時期로 1年을 春夏秋冬 四等으로 나누어서 實施하는 單位.

19) 六朔仕: 6個月 勤務.

20) 陞降: 陞進과 降等.

21) 付祿: 祿을 定하여 支給하게 하는 것.

22) 參上: 官職의 品階가 六品 이상으로 朝會에 참석할 수 있는 者를 參上, 七品 이하로 참석할 수 없는 者를 參外 또는 參下라고 한다. 그러나 雜職者는 六品이라도 朝會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23) 正: 觀象監正을 말함.

24) 參外: 七品 以下로 朝會에 參席하지 못하는 者.

25) 居魁: 試驗成績이 1等이라는 뜻.

26) 承傳: 王의 뜻을 받아서 傳하는 것 또는 傳에 받은 것.

27) 準職: 准職 ①品階가 서로 알맞는 官職 ②正三品の 堂下官.

28) 計仕: 勤務日數를 計算함.

29) 啓目: 上奏하는 啓本の 目錄, 上奏文.

30) 下批: 人事任用에 관한 王의 裁可.

31) 投刺: 名啣을 돌려서 人事하는 것.

32) 薦狀: 推薦狀.

33) 圖: 그림으로 그림.

34) 大明曆: 金에서 썼던 曆法.

35) 太一: 별의 이름. 天帝神이라고 했었고, 특히 昭格署에서는 太一星을 모셨다.

36) 曆日: 曆法에 있어서 年月日 季節 24節氣 달의 朔望弦 등을 말하는 것이다.

37) 四餘星: 計都, 羅喉 月孛 紫氣의 非實體의인 天體를 말하는 것.

), 步中星³⁸⁾, 太陰³⁹⁾을, 七政算外篇은 日月食인데 이상은 모두 籌로 課한다.

地理學에서는 靑鳥經 錦囊經은 背講, 捉脉賦 指南辨妄⁴⁰⁾ 擬龍⁴¹⁾ 憾龍 明山論 坤鑑歌⁴¹⁾ 胡舜申 地理門庭 掌中歌⁴²⁾ 至玄論⁴³⁾ 樂道歌⁴⁴⁾ 入試歌⁴⁵⁾ 尋龍記⁴⁶⁾ 李淳風의 剋擇通書 洞林照膽은 臨文으로 한다. 命課學에서는 袁天綱은 背講으로 三辰通載⁴⁷⁾ 大定數⁴⁸⁾ 範圍數 六壬五行諸記⁴⁹⁾ 剋擇通書 紫微數⁵⁰⁾ 應天歌 徐子平 玄與子平⁵¹⁾ 蘭臺妙選⁵²⁾ 星命摠括⁵³⁾은 臨文으로 하는데 각 學의 諸書는 輪次的으로 시험하였다가 후에 고쳤다.

春夏의 等에는 天文學에서는 天文類抄⁵⁴⁾는 誦으로 天文儀象⁵⁵⁾은 臨文으로 時憲法七政籌 時憲法交食籌 假令은 籌로 한다. 地理學에서는 靑鳥經은 背講으로, 明山論 胡舜申 洞林照膽은 臨文으로 한다. 命課學에서는 袁天綱上篇을 背講으로, 徐子平 範圍數 應天歌는 臨文으로 시험한다. 秋冬의 等에는 天文學에서는 步天歌는 圖로, 曆法 晷漏⁵⁶⁾ 曆引⁵⁷⁾은 臨文으로, 時憲法七政籌는 籌로 한다. 地理學에서는 錦囊經을 背講으로 하고 命課學에서는 袁天綱下篇을 背講으로 하며 地理 命課 兩學의 臨文은 모두 春夏의 等과 같다 (三學의 背講은 나이 50이상인 자에게는 臨文으로 한다). 正宗 辛亥年(15년, 1791)에 三學에서 講할 書名을 啓定⁵⁸⁾하였다 (大典通編에 國恤⁵⁹⁾ 때는 因山⁶⁰⁾ 후에 의례히 取材를 거행한다고 했다. 因山前에는 計仕해서 付祿한다).

(2)

每月 三旬의 6日 (만약 公故⁶¹⁾를 만나면 翌日로 돌려서 행한다. 時寒⁶²⁾과 盛暑에는 다만 初六日에 한 차례만 考講⁶²⁾하고 마감을 한다) 각 學의 兼教授, 教授, 訓導가 衙門에 나가서 (3인이 차지 않으면 開坐하지 못한다. 天文學 兼教授가 有故하거나 또는 친문학 교수와 혼도가 다같이 有故하면 역시 開坐하지 못

38) 步中星: 中星은 南中하는 별. 步는 推步, 즉 어떤 時期와 時刻에 어떤 별이 南中하는가를 計算하는 것.

39) 太陰: 달.

40) 指南辨妄: 風水地理書.

41) 坤鑑歌: 風水地理書.

42) 掌中歌: 風水地理書.

43) 至玄論: 風水地理書.

44) 樂道歌: 風水地理書.

45) 入試歌: 風水地理書.

46) 尋龍記: 風水地理書.

47) 三辰通載: 命課學書.

48) 大定數: 命課學書.

49) 六壬五行諸記: 命課學書.

50) 紫微數: 命課學書.

51) 玄與子平: 命果學書.

52) 蘭臺妙選: 命課學書.

53) 星命摠括: 命課學書.

54) 天文類抄: 世宗 때 李純之가 編纂한 星座解說書.

55) 天文儀象: 天文學에 관한 儀器.

56) 晷漏: 日晷와 漏刻, 즉 해시계와 물시계.

57) 曆引: 未詳.

58) 啓定: 王께 아뢰어 定하는 것.

59) 國恤: 國喪.

60) 因山: 王室의 葬禮.

61) 公故: 公的인 行事.

62) 考講: 講書試驗.

한다) 年少한 聰敏을 시험한다. 각각의 本業⁶³⁾은 辛亥年(正祖 15年, 1791)에 정한 바에 의하여 兩等의 祿取才의 書名과 七政籌를 輪次的으로 考講한다(1년을 四等으로 나누고 每等마다 9번을 考講하는데 겨울과 여름에는 각각 7번을 고강한다. ○舊例로는 天文學의 七政籌는 각 曜를 輪次로 했고, 天文類抄는 그 三垣 二十八宿를 七段으로 나누어서 誦 또는 圖로 했고, 天文曆法 儀象 晷漏 曆引은 臨文으로 했다. 地理學의 靑鳥經 錦囊經은 背講, 明山論 胡舜申 洞林照應은 臨文으로 했고 命課學의 袁天綱은 背講, 範圍數 徐子平 應天歌는 臨文으로 考講했다. 三學의 諸書는 각 等에 分屬시켜서 한바퀴 돌면 다시 시작했다. 天文學 命課學은 이번에 개혁했고 地理學은 그대로 예와 같이 한다).

分數를 通計⁶⁴⁾하여 먼저 大畫에 따르고 다음에는 仕日을 따라서 우등자는 司勇에 붙이고 그 다음은 散料⁶⁵⁾二朔에 붙이고 그 다음은 散料一朔에 붙인다(聰敏이 連三次에 우등하면 一階를 더해준다. ○天文學의 새로 가리는 생도수에는 정원이 없다. 읽은 書冊으로 시험하여 大畫이 우등인 자는 散料一朔을 붙인다. ○전의 禁漏聰敏⁶⁶⁾이 또 本業의 시험에서 우등이면 散料二朔을 붙이고 그 다음은 散料一朔을 붙였다. 지금은 폐했다. 料寔는 該廳에서 計仕하여 輪回한다).

天文學의 兼教授, 三曆官, 修述官, 別選官, 赴燕官⁶⁷⁾의 取才는 모두 七政籌와 數理精蘊, 曆象考成 중의 一書를 쓴다(兼教授와 赴燕官의 取材는 다만 三曆官만이 응시하고 三曆官의 取材는 修述官으로, 修述官 別選官의 取材는 前衡을 合同하여 응시케 한다. 修述官이라도 科擧에 合格하지 않는 者(未科者)는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地理學의 實官⁶⁸⁾과 別選官의 取才는 모두 靑鳥經, 錦囊經, 明山論, 胡舜申 중의 二書를 썼다(前衡을 合同으로 응시시켰다. 別選官은 科擧를 했든 안했든 논하지 않는다. ○實官 7人是 辛亥年(正祖 15年, 1791) 釐正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아직 正號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官職簾에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 선발된 후에는 역시 三曆官의 예에 따라 啓目を 만들어 올려서 왕의 재가를 받는다. 別選官을 올려서 任用(陞差)할 때는 아래로 감한다). 命課學의 兼教授, 誨吉官, 修選官, 別選官, 赴燕官의 取才에는 모두 協吉通義를 쓴다(諸官의 응시의 규정은 전적으로 天文學의 규정을 따라서 추吉官 같으면 三曆官과 같이 하고 修選官은 修述官과 같이 하는 類이다). 그리고 領事나 1, 2提調가 試講할 때는 먼저 大畫을 따르고 다음에는 柱數를 따르는데 畫의 優等を 취한 자를 빈자리를 보충해서 임명(塡差)⁶⁹⁾한다.

(3)

舊例로는 三曆官의 本業試에서는 粗 이상을 뽑아서 被選人을 그 획수에 따라서 차례로 빈자리를 매꾸어 임명한다. 講書는 天文曆法 등의 書에 불과하고 步星은 土·木·金·水 諸曜 중에서 그 易數⁷⁰⁾를 취하여 계산한다. 이름이 科籍에 속해 있는 자는 모두 入格시키나 課試에는 일정한 방법이 없고 계산은 불명하여 日躔⁷⁰⁾, 月離⁷¹⁾, 交食이 왕왕 맞지 않았으므로 英宗 辛酉年(17년, 1741)에 金在魯 領監事가 趙顯命 徐宗伋 李箕鎮을 바꾸어서 提舉로 하고 講에 事目을 정하여 宿弊를 버리게 되었다. 三曆官에 결원이 생기면 該廳의 후보자 추천을 얻어서 堂上官 이하가 會圈하여 3圈 이상을 얻은 자를 응시하게 한다.

63) 本業: 各自의 專功 技能.

64) 通計: 통틀어 計算하는 것.

65) 散料: 나누어서 支給하는 俸料, 月給.

66) 禁漏聰敏: 禁漏의 일을 하는 聰敏.

67) 赴燕官: 燕京에 가는 使臣을 따라가는 官員.

68) 實官: 正式 이름은 안 붙였으나 實務를 보는 特別한 官員. 本文參照.

69) 塡差: 빈 자리를 매꾸어 임명하는 것.

70) 日躔: 太陽의 位置.

71) 月離: 달의 位置.

領事와 提調가 七曜와 四書의 論語, 孟子 중에서 스스로 一書를 원하는 것으로 시험하는데 中庸, 大學은 허락하지 않는다. 먼저 大畫을 따르고 다음에 柱數를 따르는데 만일 分數가 같을 때에는 文과 籌를 모두 비교하여 취한 畫이 우수한 者로 填差한다. 文과 籌 중에 不通이 있는 자는 비록 결원이 있어도 陞進시켜서 임명하지 않는다. 比較時에 諸家の 文集을 參用하는 예가 있다.

또 春秋의 仲月에는 提調가 堂下官인 三曆官 시험을 한다. 봄에는 三經 중의 自願하는 一經과 七政의 日·月·土·木으로 하고 가을에는 四書 중의 自願하는 一書와 七政의 日·火·金·水로 시험하여 前畫과 統計하여 畫이 우등인 자를 赴燕官으로, 그 다음을 日課監印官으로 임명한다. 赴燕官은 春試에서 差送하고 監印官은 秋試에서 填差한다. 그러나 籌畫이 비록 首席이라도 講畫이 全無하면 赴燕官으로는 許하지 않는다.

文籌 중에 한번 不通한 자는 二畫을 삭감하고 籌에서는 諸曜의 純不은 連二次不通者라 하여 四畫을 삭감한다. 連三次不通者는 前畫을 전부 삭감한다. 赴燕의 응시자의 畫은 다만 赴燕試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監印試에서는 삭감하지 않으며, 監印試를 본 사람의 畫은 監印試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赴燕試에서는 삭감하지 않는다. 修述官 推步官이 만약 畫의 계산을 위하여 講을 원한다면 듣고 기다려서 實官에 陞進하면 赴燕과 監印에 응시함을 허락한다. 이것이 그대로 정착하여 式이 되어 廳事에 게시하게 되었다. 推步의 粗解立成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중전의 曆法은 혹간 差誤가 있기 때문에 儀器나 方書를 구매하기 위해 수시로 燕京에 갔는데 특별히 해를 정하지 않았다. 한 예로 英宗 辛酉年(17년, 1741)에 本監의 奏로 인하여 肅廟朝의 예에 의해 每行마다 差送⁷²⁾했었는데 癸未年(肅宗 29년, 1703)에 赴燕官의 定員을 釐正할 때 領監事 申晩이 3년에 一赴⁷³⁾토록 啓하여 恒規로 정해졌다. 辛卯年(英祖 47년, 1771)에 領監事 金致仁이 건의하기를 雲臺⁷⁴⁾의 官員을 3년에 一送하라는 王敎가 있었으나 만약에 曆法에 질문할 일이 있으면 해를 한정할 필요가 없이 陳稟⁷⁵⁾하여 特送하게 하였다. 이상은 모두 大典通編에 있다. 正宗 辛亥年(15년, 1791)에 天文學 命課學을 윤번으로 差送하게 했는데 한번은 取才로 뽑고 한번은 座目에 따라서 差送하기로 했다. 辛亥釐正節目에 있다.

○赴燕官은 명칭을 日官⁷⁶⁾이라고 했으나 曆法을 탐색하고 書冊과 儀器를 구매하는 데는 公文이 없어서 私的인 財力을 빌려야 했다. 景宗 壬寅年(2년, 1722) 겨울 10월에 本監의 提調가 왕께 청하여 許遠을 節行⁷⁷⁾에 差送하게 하고 運餉⁷⁸⁾으로 銀 2백량을 지급하여 諮問을 얻음(모咨)⁷⁹⁾ 때의 幣帛의 밀천으로 쓰게 하였다. 6일이 지나서 領監事가 왕께 아뢰기를 외국에서 曆을 만드는 것은 法禁⁸⁰⁾이 되어 있는 즉 咨文⁸¹⁾을 보내서 曆法과 儀器를 求得하는 것은 꺼릴 것(忌諱)이 없을 것이나 어찌면 의외의 患이 있을까 두려우니 전에 하던 대로 使行의 原額⁸²⁾

72) 差送: 任命하여 보내는 것.

73) 一赴: 한번 가는 것.

74) 雲臺: 書雲觀. 또는 觀象臺의 別稱.

75) 陳稟: 事理를 가려 王께 품하는 것.

76) 日官: 觀象監에서 天文에 관한 일을 맡은 官員, 또는 天文을 觀察해서 吉凶을 判斷하는 官員.

77) 節行: 季節에 따라 가는 使行.

78) 運餉: 軍糧을 운반하는 것. 여기서는 使行에 따라가는 官員의 旅行費用.

79) 咨問: 咨文을 올리는 것. 실제로는 諮問을 얻는 것.

80) 法禁: 曆法과 天文에 관한 일은 天子에 屬하는 것으로 諸侯와 國民에게는 이를 금했었다.

81) 咨文: 中國과 往來하는 公文書.

82) 原額: 使行의 費用으로 支出하는 金額을 뜻하는 것 같다.

을 가지고 五官⁸³⁾의 司曆⁸⁴⁾을 청해 만나면 확실한 것을 강구하고 널리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 王命으로 그 말과 같이 했다.

3. 解 說

1) 薦舉, 科試, 取才의 三編을 通讀할 때 觀象監의 직원의 채용과 임용의 정상적인 經路는 薦舉에 의하여 天文, 地理, 命課의 三學의 生徒를 선발하고 다음은 그 生徒가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雜科의 陰陽科에 응시하여 급제하면 그 성적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品職을 받는데, 보통 일정 기간의 試補勤務를 한다.

技能職의 일종인 觀象監의 직무는 비교적 짧은 任期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轉任된다. 임기가 끝나서 전근할 때는 1년을 四等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取才試驗의 성적이 크게 참작되어 陞降을 좌우한다. 品職에는 祿이 있는 職, 祿이 없는 職, 祿이 적은 職이 있어서 사태는 매우 안이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2) 이상의 기준경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경우가 있었음은 확실하나 자세한 것을 분명히 할 재간이 없다.

3) 官職의 짧은 임기와 轉任에서 거쳐야 할 取才試驗의 제도가 한편으로는 직원의 기능을 연마하는 부단한 刺激을 주었을 것이나 그 반면 職員들이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근무에 열중하고 또 연구와 著述을 하는 데는 적지않은 障礙를 주기도 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朝鮮祖에서의 天文曆法の 著述이 中人들보다는 양반의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는 듯하다.

4) 薦舉나 科試에 있어서 四祖單子和 保舉單子が 필수였고 보증인의 자격과 선생의 子, 侄, 婿에 대한 여러가지 우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技能職의 세습을 조장하여 드디어 中人階級の 固定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같은 觀象監 내에서도 三學 중에 天文學이 他學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도처에서 읽을 수가 있다. 왕의 治國에 있어서 天文學의 비중이 그만큼 컸고 또 天文學 자체가 難解한 數理가 필요한 技能이었음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6) 地理學과 命課學에 사용된 교과서의 명칭과 내용이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迷信에 속하는 사항들이다. 이것으로써 觀象監의 임무의 一半을 엿볼 수 있고, 舊時代를 보는 관점을 조절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7) 科試와 取才에 있어서의 採點方法은 本文과 註만 가지고는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의 深度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8) 取才篇의 (3)의 末尾에서 우리나라가 中國 曆法에 대한 의문을 풀고 또 그 書籍과 儀器를 구매하는 데 오늘날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었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83) 五官: 中國의 欽天監의 어떤 廳事를 말하는 것 같다.

84) 司曆: 曆書의 編纂을 맡은 官員.

교1) 原典의 疑龍은 擬龍의 誤記.

교2) 原典의 祈寒은 祁寒의 誤記.

參考文獻

1. 李弘植 監修, 「國史大事典」(百萬社, 1973).
2. 趙國元 校閱, 「古法典用語集」(法制處, 1979).
3. 「東洋學叢書 第七輯: 經國大典註解(影印本)」(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1979).
4. 韓祐勛 外 四人,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5.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